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중 FTA 및 AP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슈

진완석 | KBI 동국실업 구매팀 대리



진완석

KBI 동국실업 구매팀 대리

한-중 FTA 및 AP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이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FTA 활용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원산지 업무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도 방대하고 사후검증 대상이 되면 갑자기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들이 있어 틈틈이 사후검증 자료들을 구비해 놓는 것이 원산지 업무에 요령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 관리가 곧 국가 이미지에도 연관이 되고 수출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업무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실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서문

KBI 동국실업은 자동차 내·외장재를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주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차량의 대시보드(CRASH PAD ASSY), 콘솔(CONSOLE) 등이 있고 크고 작은 플라스틱 사출물들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 독일, 체코, 스페인, 중국, 멕시코에 해외 법인이 있으며 이중 중국과 멕시코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선 당사가 한-중 FTA 및 APTA 적용 과정 및 원산지 관리에 있어서 초기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이슈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실무자들의 실제 업무 환경을 이해 하여 실무차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본문

2015년 12월에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2년차 협정세율을 바로 적용받기 위해 국회에서는 한-중 FTA 발효를 앞당기고 있었고 기존 여러 나라로 고객사를 통한 로컬 수출과 중국의 현지법인으로 직수출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당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APTA협정(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만 적용 하고 있었기에 이를 보완 해줄 한-중FTA 효과를 상당부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 발효가 되고 FTA를 적용 시키려다 보니 당사는 준비가 미흡했고 기존까지 고객사에게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던 것과 달리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첨부 서류 관리, 현지법인과 HS CODE 일치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 이슈가 존재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있었던 여러 이슈 중에서 FTA 발효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이슈들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당사가 찾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시간 지연

당사는 한-중 FTA 발효 전에는 직접적인 수출은 중국밖에 없었기에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인지만 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한-중 FTA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주/1~2회 수출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간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물건이 먼저 중국 현지에도착하고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 통관이 지연되어 보관료 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원산지 증명서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 당사 해외법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2개월 동안 인증수출자 취득에 매달린 결과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함과 동시에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승인까지의 시간이 빨라져 통관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통관 지연이 생겼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은 되었지만 현지 통관에 원본이 필요했기때문에 EMS등으로 원본이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관세청에서 2016년 7월 13일부터 시작한 CO-PASS 시행으로 중국과 원산지 서류 전자 교환 등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가 사라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



인증수출자 취득 전후 첨부서류

Before

1. 제조공정도
2. 원재료내역서 _ BOM
3. 원산지소명서
- 4-1. 제출 원산지확인서
- 4-2. 수취 원산지확인서
5. 품목분류 근거자료
6. 거래증빙자료
7. Invoice & Paking list
8. 수출신고필증

After

첨부생략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1. 목적

-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인 특혜심사를 위함
* 근거: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2. 처리방법

-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 적용(원칙)
※ FTA관세특례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수입 C/S에서 「서류제출」로 선별되었더라도, 원산지자료 교환 시스템(EODES)에서 확인 가능하면 P/L 처리 가능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에서 C/O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필요한 범위 내)의 제출을 요청*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제25조(보완요구)

-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 ☆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 ☆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특혜관세를 적용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혜적용하고 원산지 검증을 의뢰
-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자료제출을 못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혜배제

3. 시행시기 : 2016. 7. 13(수)부터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2016.3.24.)”은 폐지

2. 한국과 중국의 HS CODE 불일치로 인한 원산지 증명서 승인보류

HS CODE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지만 국가별로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수출신고 정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다 보면 한국과 중국의 HS CODE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다.

수출하는 품목 중 협력사에서 구매하여 가공없이 '상품'으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요청하는 HS CODE의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였다.

그렇다고 현지 요청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수출신고와 원산지 증명서의 HS CODE가 달라 세관에서 승인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추후의 사후검증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신고의 HS CODE가 상이하여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받지 못함




현지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원산지 증명서 신청



이에 해결방안으로 관세청에서 배포된 ‘한-중 FTA 이행안내’에서 참고를 얻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현지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한국에서 수출하는 HS CODE와 현지에서 수입하는 HS CODE가 상이하다는걸 증빙으로 제출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증빙 서류로 현지의 HS CODE 품목분류서, 혹은 각각 상이한 HS CODE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여부 등이 있지만 당사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현지 수입면장을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첨부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다.



중국해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방법

- ▶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HS6단위를 기재함
- ▶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해석상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정정해 주고 있음
 - 중국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이 되고
 -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 상기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를 정정요청

관련 규정

- 품목분류상이시 처리지침(FTA집행기획담당관-760, 2014.4.1.)
 -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 *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의 수입국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발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중 FTA 이행안내 20선

3. APTA 신규원산지 결정기준 적용

APTA(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으로 인해 철강, 고무, 금속품, 플라스틱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추가 되었다.

당사는 기존에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으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 가치기준 밖에 없어서 아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당사가 수출하던 품목중에 HS CODE 870829(자동차 차제 부분품) 품목은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BD50'이고 APTA 협정은 B55 밖에 없기 때문에 두개 협정이 모두 부가가치 기준이라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부가가치기준밖에 없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던 품목들을 재검토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해외 법인의 관세 혜택이 증대되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차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2018. 6. 27,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I. 배경

-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425(2018.6.25.)호와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2차 개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APTA 원산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II. 관련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관세법*
 - *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 APTA 원산지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III. 주요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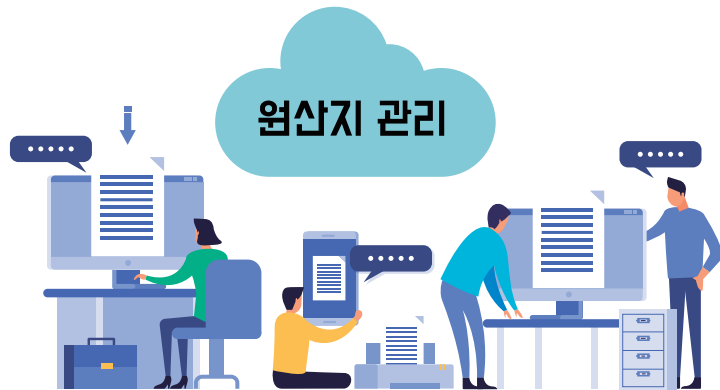
- (1)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도입
 - (기존)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기준(RVC 45% 이상) 및 역내부가가치 누적기준(RVC 60% 이상)
 - (추가신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적용(부속서 2가)
 - *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HS 4단위 품목 153개
 - ※ 붙임1: 2차 개정으로 추가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품목
 - 부속서2가 품목(CTH 적용품목)은 우선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 하고, 역내부가가치기준(RVC)을 순차 적용

마치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FTA 활용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당사와 같은 자동차 부품사는 직접 적인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완성차로 수출 되는 경우 또는 고객사를 통한 부품 로컬 수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원산지 검증 및 원산지 소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자동차업계 특성상 제품을 혼자 생산하는 것이 아닌 많은 협력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사의 원산지관리도 중요하지만 부품을 구매하는 협력사의 원산지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원산지 업무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도 방대하고 사후검증 대상이 되면 갑자기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특성들이 있어 담당자 입장에서는 틈틈이 사후검증 자료들을 구비해 놓는 것이 원산지 업무에 요령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품목분류근거자료’ 같은 경우 한번 작성을 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업무 초기에 세팅을 해 놓으면 향후 업무가 수월해질 수 있다.

원산지 업무 특성상 직접적으로 보는 혜택이 없는데 업무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수 있기에 많은 담당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원산지 관리가 곧 국가 이미지에도 연관이 되고 수출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업무를 하였으면 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실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